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건축·기반시설·토지이용규제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80호,
제2214583호, 제2214584호 및 제2214586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58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583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84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V.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86호)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5
2. 법률안별 검토	13
가. 「국토기본법」의 개정(안 제27조제3항)	13
나. 「건축기본법」의 개정(안 제13조제3항)	17
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의 개정 (안 제18조제3항)	20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안 제16조제3항)	24

I.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58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 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6.

다. 회 부 일 : 2025. 1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Ⅱ.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58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 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6.

다. 회 부 일 : 2025. 1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Ⅲ.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8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 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6.

다. 회 부 일 : 2025. 1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 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IV.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58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 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6.

다. 회 부 일 : 2025. 1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 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개정안들은 「국토기본법」, 「건축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건축·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규제 관련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¹⁾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각 정부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민간위원)을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정부위원회가 지방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심의·의결하더라도 지방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학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아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큰 102개 정부위원회를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²⁾³⁾

개정안들은 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건축·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규제 관련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라 함) 또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시군구청장협의회”라 함)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및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위원장·부위원장 제외) 】

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국토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법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2025. 12. 16. 참조

3) 2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이 2025년 12월 16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2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중에 발의되었음. 목록은 [참고(p.9)] 참조

위원회		현행	개정안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기반시설 관리위원 회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토지이용규제심의위 원회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 조문 정리

지방사무와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고, 지방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정책의 현장성·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위원(민간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안들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각각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참고 1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연 번	법령 (대상 조문)	내용	소관부처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18개 법령의 일괄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	국가통계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국가 데이터처
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	기초학력보장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교육부
3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농촌진흥청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문화다양성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문화체육 관광부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기후에너지 환경부
6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중앙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해양수산부
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농림축산 식품부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신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기후에너지 환경부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교육부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4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교육부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시행령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교육부

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고용노동부
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교육부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산업통상부
1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기후에너지 환경부
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기후에너지 환경부
1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중양환경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산림청
2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법률안 소관 상임위(직제순)

연 번	소관 상임위 (소관 부처)	법률 (대상 조문)	주요 내용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1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제3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정태호의원 (2215068)
2	행정안전 위원회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제3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 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건영의원 (2214497)
3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900)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제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8)
5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2)
6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제3항)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3)
7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7)
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 통상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3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원이의원 (2214427)
9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제3항·제4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원이의원 (2214424)
1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주영의원 (2214770)
1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이학영의원 (2214814)
12		환경보건법 (제10조제3항)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박정의원 (2214982)
13		에너지법 (제9조제5항)	에너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주영의원 (2214769)
14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제13조제3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3)

15		국토기본법 (제27조제3항)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0)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4)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제3항)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6)
18		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제2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7)
1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 율화법 (제107조제3항)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2)
20	성평등가족 위원회 (성평등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51)
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제4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50)
22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제4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48)

※ 자료: 법제처

2. 법률안별 검토

가. 「국토기본법」의 개정(안 제2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⑤ (생략)	제27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4), 국토종합계획·초광역권계획·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계획 등

4) 「국토기본법」

주요 계획을 심의함(같은 조 제2항5)).

현행법은 국토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면서,⁶⁾

① 당연직위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② 위촉위원으로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을 규정하고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5) 「국토기본법」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국토기본법」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있음(같은 법 제27조7)).

【 국토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국무총리
부위원장(2명)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중 호선한 1명(위원과 중복)
위원 (41명)	당연직위원 (15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국무조정실장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 (26명)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됨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위원에 포함됨.

국토정책위원회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⁸⁾을 심의하고, 도중

7) 「국토기본법」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8)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종합계획⁹⁾ 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을 위촉위원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민간위원 선정 시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으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9)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나. 「건축기본법」의 개정(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 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며(「건축기본법」 제13조¹⁰⁾), 건축정책의 수립·조정 및 건축행정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같은 법 제14조¹¹⁾).

10) 「건축기본법」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현행법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②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¹²⁾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위원과 중복)
위원(3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11명)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19명)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

11) 「건축기본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건축기본법」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됨.

현행 「건축법」 상 건축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체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¹³⁾, 건축행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가 명문화될 경우 국가건축정책 수립 시 균형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3) 현행 「건축법」 제11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체계이나, 일정한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광역단위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의 개정
(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생략) 2. 민간위원: <u>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민간위원: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u> <u>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

치된 위원회로(「기반시설관리법」 제18조제1항14)),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 관련 계획, 정책 조정 등을 심의함(같은 조 제2항15)).

현행법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명(국무총리)과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정부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민간위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⁶⁾

1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국무총리
위원 (28명)	정부위원 (8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위원 (20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민간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민간위원에 포함됨.

현행법상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규정(같은 법 제6조17) 및 제9조18) 되어있는 점 등

1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군·구인 경우 해당 시·군·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을 민간위원에 추가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관리정책 수립 등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 기반시설 관리 정책의 수립·이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기반시설 관리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정책 이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로서¹⁹⁾,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심의함²⁰⁾.

1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국토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 1명(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①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²¹⁾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국토교통부장관
부위원장(1명)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17명)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9명)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8명)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됨.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신설·강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바²²⁾, 토지규제 정책 심의 과정에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할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토지규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 규제를 신설·운영하고 있고²³⁾, 토지이용 규제 평가 시 지역별 토지이용 실태, 주민 수용성 등 지방 여건에 대한 의견 반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9

23) 25.7월 기준 345개 토지이용 규제 중 지자체가 신설한 규제는 53개